

#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

1. **이용 계약기간** : 본 센터와 계약자는 이용자에게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.
  - 1) 센터와 이용자 또는 대리인은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양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이용자 또는 보호자,법정대리인에 계약한다
  - 2)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으로 한다.
  - 3) 등급의 변경, 계약기간 종료시, 이용자 또는 보호자와의 상호 협의를 통하여 재계약을 할 수 있다.
  - 4)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연장 된다
  - 5) 「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」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,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,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. -> 운영규정에 정함으로 수가 변경시 재계약 필요없음.(표준 약관란에 표시됨)
2. **이용계약의 목적** : 센터와 대상자는 다음의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,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센터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.
3. **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**
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용료를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된 이용료를 지체 없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안내하고 이용료에 반영 한다.

  - 1) 비용의 부담은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항목과 동일하다.
  - 2)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
    - (1)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서비스가 진행되는 경우 비용부담은 국민기초수급자와 국가유 공자는 0%, 차상위층/의료경감자/기타 국가유공자는 9%와 6%, 일반은 15%로 한다.
    - (2) 병원이용부담과 이동도움 등 서비스진행 중 발생하는 비용은 대상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
    - (3) 매년 변경되는 장기요양 급여수가 및 이용료는 별지로 첨부한다.(2023.01.01. 추가)
    - (4) 변경된 비급여 대상 항목은 별지에 첨부하도록 한다
4. **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**
  - 1) 신원인수인의 권리, 의무,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.
    - (1) 이용자는 계약 시 대리인을 지정할 경우 대리인은 신원인수인(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)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
      - A. 신원인수인의 권리
        - ① 이용자의 서비스 제공에 대한 내역, 장기요양급여비용등에 관하여 자료 요청할 권리가 있다.
        - ② 이용자에게 업무범위 내에서 질 높은 서비스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.
      - B. 신원인수인의 권리
        - ① 서비스제공에 관련된 자료 및 기타 자료의 요청 시 본 센터에 제공하여야 한다
        - ② 이용자의 신변 또는 계약 시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 즉시 본 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.
        - ③ 장기 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하여야 한다.
        - ④ 이용자가 의도적으로 본 센터와 담당요양보호사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배상의 책임을 진다.
        - ⑤ 관계 법령에 의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부담할 의무를 진다.

## 5. 계약의 해지

- 1) 계약해지는 문서로 하되 서면통보가 어려운 경우 구두상으로 명확한 해지의사를 전달한다.
- 2) 계약해지사유는 대상자 사망 시와 타 기관 입소, 대상자 개인적인 사정으로 급여제공 중단을 요청한 경우와 요양보호사가 정상적인 급여제공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와 기관운영에 고의적으로 피해를 주거나 민·형사상의 문제를 제기한 경우 및 본인부담금을 6회 이상 연체한 시로 한다.
- 3)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,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센터에 통보해야 한다.
- 4)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